

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6. 13. ~ 6. 20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(건축물 해체허가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정**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		
	지번 : 434-14번지	관련지번 :	
	대지면적 : 1,267㎡	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자연취락지구, 고도지구 등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685.294㎡	건폐율 : 54.09%	층수 지하 : / 지상 : 2층
	주용도 : 근린생활시설, 단독주택(다가구)	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15가구 / 2동
	최고높이 : 10.1m	용적률 : 99.49%	연면적 : 1,260.492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체공사안전점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점검위치 검사기준(허용범위)/필수확인점 작성은 해체계획서 p. 또는 해체계획서 항목으로 표기할 것 - 검사항목은 해체공사 착수전, 해체공사, 해체공사 완료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등을 명기할 것 - 검사결과는 해체작업자 및 감리자의 항목이므로 공란으로 할 것 ○ 가시시설물 구조검토서를 작성할 것 ○ 고소작업차는 필요시 임대하여 작업할 예정으로 작성되어 있으나, 불가결한 경우에 대비하여 장비 사양 등을 작성할 것 ○ 대지전체에 공사용 외부펜스 설치해 해체공사 시작 시점에 설치하는게 바람직해 보여짐 ○ 비계의 높이가 18.5미터 높이로 표기된바 바닷가의 해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짐 ○ 8미터 도로변 낙하물 및 차량, 보행자 통행시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구간 양측 통제수를 배치하여 보행자는 서측끝단으로 유도 	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		